#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기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[장규권 의원 발의]

의안번호 2641

발의일자 : 2024. 11. 12.

발 의 자 : 장규권 의원

찬 성 자 : 정재동 의원

#### 1. 제안이유

사회적 현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의 정착 및 생애주기별 맞춤 형 지원사업의 체계적·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 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」로 변경함.
- 나.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 ~ 제3조).
- 다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라.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
- 마. 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.
- 바.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의체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.
- 사. 홍보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조, 제5조, 제15조, 제20조 등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기 타

1) 현행 조례 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 : 2024. 11. 15. ~ 11. 21.

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

#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,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 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1인가구"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- 2. "사회적 가족"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,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.
- 3. "사회적 가족도시"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
- 4. "공유주택"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,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 형의 주택을 말한다.
- 5. "공유주방"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간 및 활동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·경제 ·사회·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 - 2.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
  - 3.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  - 4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
  - 5.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
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·성별·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제7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  - 1. 범죄예방, 생활안전,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
  - 2. 질병 · 외로움 예방, 돌봄 등 건강 지원사업
  - 3. 공유주택, 주거정착 지원 등 주거 안정 지원사업
  - 4. 공유주방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
  - 5. 식품 조리법 개발,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
  - 6. 맞춤형 일자리,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

- 7. 문화 · 체육 · 여가 생활 지원사업
- 8.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
- 9.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 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제7조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사무의 위탁)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
  - 2.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
  - 3.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운영
  - 4.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제10조(협력체계의 구축 등)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금천구 1인가구 지역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 -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  - 1. 금천구 1인가구 신규사업 발굴
  - 2. 금천구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안
  - 3. 금천구 1인가구 사업 홍보 및 협력방안 모색
  -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"구"라 한다)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1조(홍보)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금천구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  -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·배부할 수 있다.
- 제12조(포상)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

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현행조례

###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[시행 2017. 5. 15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916호, 2017. 5. 15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,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1인 가구" 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·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.
- 2. "사회적 가족"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,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.
- 3. "사회적 가족도시" 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- 4. "공유 주택(Share House)"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,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.
- 5. "소셜 다이닝(Social Dining)" 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

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- 2.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
- 3.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- 4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
- 5.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행계획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 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돌봄서비스,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
- 2. 공유주택(Share House) 등 주거 지원 사업
- 3. 소셜 다이닝(Social Dining)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
- 4. 1인 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 지원 사업
- 5.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
- 6.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
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『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』를 따른다.

제8조(포상)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『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』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 (제916호, 2017.5.15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# □ 건강가정기본법

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17호, 2024. 3. 26., 타법개정]
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2. "가정"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·양육·보호·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  - 2의2. "1인가구"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- 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한다.
 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 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)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
  - 2.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
  - 3.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
  - 4.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
  - 5.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

- 6. 가족의 양육 ·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
- 7.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
- 8.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
- 9.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
- 10.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
- 제20조(가족실태조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,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·성별·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